

## UCP 600에서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연구\*

박 석 재\*\*

- 
- I. 서 론
  - II. 통지은행의 의무 및 유의사항
  - III. 제2통지은행의 책임 및 제 문제
  - IV. 통지 지연 및 위조 신용장의 통지
  - V. 결 론
- 

주제어 :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의 통지, 제2통지은행

### I. 서 론

개설은행은 수입상(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수출상(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설은행과 수출상이 다른 나라에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소재하는 관계로 직접 통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수출상 소재지에 있는 자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하고, 이 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sup>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의 통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가 되어 개설은행 또는 수출상과 신용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무 및 책임을 지게 된다. 더욱이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 ; 이하 UCP 600이라 함)에서는 제2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고는 UCP 600에서의 신용장의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지은행의 의무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고찰하고, 제2통지은행의 제정배경 및 그 영향 등에 대하여 고찰한 후 통지지연 및 위조 신용장의 통지에 따른 통지은행의 책임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는 연구방법으로서 신용장의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최신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그런데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통지은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관련문헌도 다소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용장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이론적 분석 과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학계, 무역업계 및 은행업계의 관계자들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 平野英則, “信用狀の通知遅延”, 『銀行法務21』, No.713, 2010. 3, p.57.

## II. 통지은행의 의무<sup>2)</sup> 및 유의사항

### 1. 신용장의 외견상의 진정성 확인 의무

UCP 600 제9조<sup>3)</sup> b항 전반부는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생략)…을 표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의 외견상의 진정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조항에는 UCP 400 제8조 및 UCP 500 제7조 a항의 규정방식과 달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shall take reasonable care)라는 문언이 삭제되어 있다. 즉, ‘reasonable care’는 그 용어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해 진정성 판단기준에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하였기에, UCP 600에서는 ‘satisfied itself’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여 신용장 그 자체의 외견상 충족요건으로 진정성을 파악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sup>4)</sup>

동 조항에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은 각각의 은행의 절차에 따라서 진정성의 확인 절차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에 관한 의미이며, 진정성의 확인이 재판에서 다투어진 경우에는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절차의 존재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된다. 예를 들면 제2통지은행이 위조신용장을 통지한 경우,

---

2) 통지은행의 의무는 신용장의 외견상의 진정성 확인의무와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시킬 의무라는 2대 의무가 있으며, 기타 세 가지 의무로서 통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 그 취지를 개설은행에게 통보할 의무,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은행에게 그 취지를 통보할 의무 및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보할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平野英則, “通知銀行の義務(その1)”, 『銀行法務21』, No.705, 2009. 8, p.64.). 본고에서는 기타 세 가지 의무 중 뒤의 두 가지 통보의무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동 조항은 UCP 500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신용장 외에 조건변경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76.). UCP 600은 UCP 500에 비해 통지은행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이대우·양익동, 『신용장론』, 두남, 2007, p.79. ; 한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49.).

4)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5, p.74.

동 은행이 책임을 지는가의 여부는 동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제1통지은행의 cover letter와 신용장의 진정성의 확인이 행해졌는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것이다. 제1통지은행이 통지하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제2통지은행에게 송부되어 온 위조된 신용장을 제2통지은행이 체크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수익자에게 통지한다면 수익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제2통지은행은 제1통지은행의 통지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sup>5)</sup>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의 확인의무가 맡겨지는 것은 당해 신용장이 위조인 것에 의하여 수익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 또는 당해 신용장에 기초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우편신용장의 경우에는 CD 또는 책자를 통해 은행간에 배포되는 서명감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을 대조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나, 은행 실무처리는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개설여부 및 진위여부를 전신으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전신신용장(TELEX 또는 SWIFT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간 상호 교환된 암호숫자의 해독(BKE) 또는 비밀번호표(Test Key)를 교환하여 진정성을 확인하며, 현재 거의 모든 신용장 통지는 SWIFT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이는 SWIFT 방식을 통해 신용장 위조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그리고 통지은행이 전기방법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당해 신용장이 진정하지 않는(위조인)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그 외견상 진정성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므로, 위조신용장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sup>10)</sup>

5) 後藤守孝·吉野弘人, 『信用狀統一規則の實務Q&A』, 中央經濟社, 2008, p.65.

6) 平野英則, “偽造信用狀の通知”, 『銀行法務21』, No.712, 2010. 2, p.60.

7) SWIFT에 의한 경우는 자행이 Authenticator Key의 교환을 한 환거래은행인 개설은행만으로부터 메시지가 착신한다는 자동적인 시스템 체크에 의하여 신용장의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平野英則, 전계 주 6, p.60.).

8)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75.

9) W. Baker & J.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p.51.

10) 平野英則, 전계 주 2, 전계논문, p.65.

## 2. 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의무

UCP 600 제9조 b항 후반부는 “통지은행은 …(생략)…그 통지가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UCP 600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sup>11)</sup>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그 취지에 관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지 의무의 개념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통지은행에게 송부된 화환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이 통지은행에 의하여 정확히 제2통지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통지은행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정확히 반영하는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은 자행에 의하여 수령된 정보가 수익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확실히 할 의무를 진다.”<sup>12)</sup>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이 통지은행에게 정확히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의하여 수익자의 충족하는 제시를 가능하게 하고, 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상술하면 동 개념은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에 변경과 추가를 더하지 않고 통지하는 것, 즉, 수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과 통지하여야 하는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이 一語一句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통지은행에게는 진정성의 확인에 더하여 수령한 신용장을 정확히 반영한 통지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에 추가된 것이다. UCP 500에도 규정되어 있었던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외견상 진정성의 확인의무<sup>13)</sup>에 더하여 제1통지은행(또는 제2통지은행)은 자행의 통지가 개설은행(또

11) UCP 500의 개정작업 중 어떤 은행이 신용장의 통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관해서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지만,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그 통지의 정확성에 관해서는 통지은행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의 후 그 통지의 정확성에 관하여 통지은행에 의한 책임을 제정하는 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경위가 있다(ICC,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511, 1993, p.17).

12)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p.46.

13) 진정성의 확인은 위조신용장 저지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문서에 의한 신용장의 경우에 위조가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문서에 의해 개설된 신용장은 서명대조에 따라서 진정

는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에 관한 확인의무를 지는 것이 추가된 의미이지만, 이것은 종래부터 행해져 온 것을 명문화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sup>14)</sup>

게다가 ICC는 “화환신용장은 종종 통지은행에 대한 refinance의 의뢰, 여신의 약속 및 특별한 지시와 같은 은행간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통지로부터 제외 또는 말소되는 것이 가능하다.”<sup>15)</sup>고 코멘트하며, 통지은행이 통지하여야 하는 신용장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은행간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가 수익자에 대하여 통지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지은행은 자행에 대한 은행간 정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통지에 신용장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 G. Collyer씨는 통지은행이 신용장에서 보상지시 및 송부처의 주소를 삭제하고, 자행이 당해 신용장에 기초하는 서류의 송부와 보상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보유하고 있는 취지의 문언을 추가하는 일이 있지만, 통지은행은 당해 신용장에 가공을 더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시되는 서류의 처리에 관하여 개설은행과의 사이에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행의 통지에 그와 같은 지시를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6)</sup>

요컨대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신용장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담보하는 취지로서 UCP 600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sup>17)</sup>

---

성의 확인을 행하지만, 서명은 위조되기 쉽고 동시에 때때로 교묘히 행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대조는 한계가 있다. 위조방지책으로는 문서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 중지, 금액이 크거나 부자연스러운 신용장을 접수한 때는 개설은행에게 SWIFT 등의 수단으로 신용장의 개설확인을 행하는 것이다.

14)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거서, p.64.

15) ICC, *supra* note 12, *op. cit.*, p.46.

16) 平野英則, 전거 주 2, 전거논문, p.65.

17) 高砂謙二, “信用狀統一規則改正とノンコルレス銀行の第二通知銀行問題(上) - 中小金融機關實務對應策お裁判事例から検討 -”, 『國際金融』第1187號, 2008. 4, p.54.

### 3. 신용장을 송부하여 온 은행에 대한 통보 의무

UCP 600 제9조 e항은 “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을 송부하여 온 은행에 대한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조항은 UCP 500 제7조 a항 3문과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이 통지 실행여부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이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sup>18)</sup>은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UCP 600 제9조 f항 제1문) 및 수익자가 제3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다.<sup>19)</sup> 본래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통지를 위탁받은 은행은 그것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것인가 통지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설은행으로부터의 통지위탁의 거절이며 따라서 위임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UCP는 통지를 위탁받은 은행에게 개설은행에 대한 통보의무를 맡기고 있다. 게다가 통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통지를 위탁받은 은행은 통지를 전제로 하는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sup>20)</sup>

한편, 통지은행(또는 제2통지은행)이 이들 의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 관계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응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sup>21)</sup>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는 의무가 아니므로 환거래 계약이 없는 것 또는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개설은행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sup>22)</sup>

18)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통지은행이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통지은행이 미국계 은행인 경우 신용장 내용에 미국에서 금지시키는 SDN List가 있는 경우 통지를 거부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게서, p.75.).

19) UCP상 제3국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익자에게로의 우송 도중에 분실위험이 있는 것과 수익자로부터 통지수수료의 징수가 곤란한 것을 이유로 통지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20) 平野英則, “通知銀行の義務(その2)”, 『銀行法務21』, No.706, 2009. 9, p.63.

21)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게서, pp.65~66.

#### 4. 신용장 통지 시의 유의사항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은 위임관계에 있다. 접수한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따라서 UCP 600에 규정된 통지은행의 의무를 준수하고, 분쟁 방지를 위하여 하기와 같은 사항의 점검을 행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지은행이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개설은행이 환거래은행인가의 여부이다. 만일 비 환거래은행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둘째, 신용장이 외견상 정규로 개설된 것인가의 여부이다. 개설은행의 서명 대조, 텔렉스의 test key의 대조, SWIFT의 Authentication Key의 유무에 따라 진위의 확인을 행한다. 셋째, 신용장의 원본 여부이다. 넷째, UCP 600 준거문언 여부 및 취소불능 신용장 확인이다. 다섯째, 신용장 조건에 불안전·불명확한 점이 없는가의 확인이다.<sup>23)</sup> 전신의 경우에는 훼손(mutilation)과 왜곡(garble)이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설은행의 확인의 의뢰 또는 수권의 문언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일곱째, 신용장의 수익자가 자행 앞으로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는(자행 인수) 조건의 신용장인가의 여부이다. 자행 인수의 경우는 별도 行内 稟議로 개설은행 앞 여신제공의 승인을 얻는다. 여덟째, 매입 제한 문언의 유무이다. 비 환거래은행 개설의 신용장이고, 매입이 자행에게 제한되어 있다면 필요에 응하여 개설은행에게 조회한다. 아홉째, 이중 통지 여부이다. 전문에 Avoid Duplication 등의 주의 환기문언이 없는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sup>24)</sup>

22) 後藤守孝·吉野弘人, 전제서, p.72.

23) 일부 신용장에는 수익자에게로의 통지가 통지은행에 의한 통지수수료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는 잘못된 조건들을 담고 있다(M. Burjaq, "UCP 600 one year on", *DClInsight*, Vol.15, No.1, 2009. 1/3, p.6.).

24)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ル 外爲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p.3.

### Ⅲ. 제2통지은행의 책임 및 제 문제

#### 1. 제2통지은행 규정의 신설 배경

UCP 600 제9조 c항은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second advising bank’)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2통지은행<sup>25)</sup>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sup>26)</sup> 제2통지은행이 이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개설은행이 제2통지은행과의 사이에서 환거래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때이다. 이 점에 관하여 ICC는 “제2통지은행의 이용 및 이에 대한 언급은 오랜 세월의 관행이었지만 UCP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신 조항은 제2통지은행이 통지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통지은행과 완전히 같은 역할을 가지는 것, 및 그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통지은행으로부터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27)</sup>라고 코멘트하고 있다.<sup>28)</sup>

게다가 UCP 600에서 제2통지은행의 규정이 제정된 것은 예를 들면 미국 소재의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London Banker를 경유하여, 유럽 각국에 소재하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게 통지가 행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sup>29)</sup>

UCP 600에서 처음으로 제2통지은행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UCP 500하에

25) 제2통지은행은 제1통지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김종철, “UCP 600의 주요쟁점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7. 8, p.154.). 즉, 제2통지은행은 통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의 외견상의 진정성 확인의무와 통지서의 수취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22.).

26) 제2통지은행은 현재 신용장 통지 관행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UCP 600에서 새로이 반영된 것이다(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p.9~10.).

27) ICC, *supra* note 12, *op. cit.*, p.46.

28) 平野英則, 전계 주 20, 전계논문, pp.64~65.

29)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68.

서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수령한 통지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통지를 행하는 일이 있었다. UCP 500에는 제2통지은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통지에 수고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통지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UCP 600에서는 제2통지은행에게 진정성의 확인의 무가 부과되므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진정성 확인절차와 후일의 조회와 만일의 경우의 소송에 대비하여 기록의 보존 등의 부담이 새로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각 은행은 부담의 일부를 수익자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였다.<sup>30)</sup>

통지은행이 제2통지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가 생각된다. 첫째로 당초부터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1통지은행에 대하여 제2통지은행을 사전에 지정하고 신용장상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제1통지은행에게 통지가 되었지만 사정상 제2통지은행을 선택하지 않고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자가 해외의 고객이며, 해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각된다. 당연히 비올로는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sup>31)</sup>

## 2. 제2통지은행의 책임 명확화 및 그 영향

지금까지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통지하는 일이 있었다. UCP 500하에서는 경유은행에서는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장과 조건변경을 어떤 수고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수수료를 떼지 않고 수익자에게 인도하고 있었다.<sup>32)</sup> UCP 600하에서는 제2통지은행으로서 경유은행의 책임이 명확화되고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과거의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는 결과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령하기까지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은행의 사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도 응분

30)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게서, p.73.

31) 高砂謙二, 전게논문, p.54.

32) UCP 500하에서 자기 나라의 은행은 "advice-through" 방식이라고 칭하고 제2통지은행은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조건변경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하고 있었다.

의 부담을 요구하여 제2통지은행에서 새로이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제2통지은행 중에는 책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제2통지은행의 입장에 서는 것을 거절하는 은행이 나타나는 일도 예상된다.

개설은행에서는 통지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이 지정한 통지은행과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비 환거래은행)에는 자행의 환거래은행을 경유하여 개설의뢰인이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게 통지를 행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통지은행 경유의 통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직접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 은행을 사전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사이에서 약속해 둘 필요가 있다.<sup>33)</sup>

일본에서는 전국은행협회가 외국은행을 포함하는 각행에게 호소하여 제1통지은행이 제2통지은행에게 인도하는 신용장과 조건변경에 첨부되는 통지서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교환회의를 실시하였다. 서명확인이 불가능하면 제2통지은행은 통지서 접수를 할 때마다 제1통지은행에게 진정성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무부담이 한층 증대하고 처리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명교환회의에는 약 60여 은행이 참가하였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참가가 불가능하였던 은행들은 개별 은행마다 통지가 많은 은행과 서명을 교환하여 대처하거나 혹은 SWIFT로 통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환거래계약이 없기 때문에 SWIFT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환거래계약이 있는 은행에게 시간 내에 받아서 통지를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에 따라 제2통지은행은 거의 순조롭게 진정성의 확인이 가능한 체제가 갖춰졌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방법으로도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은 뒤 전신 등에 따라 제1통지은행에게 확인을 행하고 있다.<sup>34)</sup>

제2통지은행의 신용장 진정성의 확인에 관해서는 통일적인 사무처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실무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다. 기본적으로는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제2통지은행에게 통지가 된 것은 틀림없이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온 것임을 제2통지은행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일 유효한 방법으로는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온 Cover Letter에 의하여

33)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p.67~68.

34)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73.

서명 등이 바르며,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다.<sup>35)</sup>

한편 일부 관할권에서는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제2통지은행의 서비스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만약 제2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 국가에 의하여 외교 또는 무역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 내의 은행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개설은행이 제1통지은행의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일 지라도, 자신의 정부에 의하여 블랙리스트에 실린 국가의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sup>36)</sup>

### 3. 제2통지은행 경유로 지정된 신용장의 제1통지은행으로부터의 직접 통지 가능 여부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수령한 제1통지은행이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에 관하여 UCP 600에 규정은 없지만, 제9조 c항에서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으로 따진다면 제1통지은행은 제2통지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신용장이 제2통지은행 경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통지은행에서 새로운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수익자로서는 수수료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지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익자의 의뢰가 있으면 제2통지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통지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제1통지은행으로서도 수고와 시간을 더는 것이 가능하다. 단, UCP 600에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은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1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한 취지를 이유를 붙여서 연락하여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sup>37)</sup>

35) 高砂謙二, 전계서, pp.54~55.

36) M. Ford, "Issues and challenges under UCP600", *DCINSIGHT*, Vol.13, No.4, 2007. 10/12, p.23.

37) 後藤守孝·吉野弘人, 전계서, p.69.

#### 4. 제2통지은행의 수수료 문제

제2통지은행이 통지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에 따라 수수료 징수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장이 통지수수료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제1통지은행은 제2통지은행에게 통지수수료의 대리징수를 의뢰하거나, 또는 제1통지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대리징수에 관해서는 규칙은 물론 관행조차도 없다. 수익자에 대한 수수료는 제1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으로부터 따로 따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징수 규칙이 아직 확립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역으로 개설의뢰인 부담의 경우 제2통지은행은 제1통지은행에게 통지수수료의 대리징수를 의뢰하거나 또는 제2통지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생각되지만, 상기의 수익자 부담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개설은행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제1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으로부터 따로 따로 행해지고 있다. 제2통지은행에서의 진정성 확인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제2통지은행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의미이지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칙도 관행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후의 과제로 남겨진다.<sup>38)</sup>

### IV. 통지 지연 및 위조 신용장의 통지

#### 1. 신용장의 통지 지연에 따른 통지은행의 책임

##### (1) 신용장의 적시 통지의무

##### ① 수익자에 대한 적시 통지의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과 수익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이 통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UCP 600 제9조 e항). 따라서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에게는

38) 後藤守孝·吉野弘人, 전제서, p.81.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더구나 이것을 적시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인 판례,<sup>39)</sup> 통설 및 입법례<sup>40)</sup>이다.<sup>41)</sup>

② 개설은행에 대한 적시 통지의무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적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sup>42)</sup> 왜냐하면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익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무에 위반하여 부적절한 시기에 통지함으로써 개설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통지은행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따라 수익자는 개설은행과 통지은행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관계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UCP 600 제4조 a항), 통지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통지은행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결과 수익자가 적시의 통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익자의 통지은행에 대한 권리는 아니며,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sup>43)</sup>

39)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통지지연의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문제가 다투어진 미국 판례의 선도적인 사건으로서 *Sound Market Street v. Continental Bank International*, 819 F.2d 384(3d Cir. 1987)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통지은행은 수익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을 적시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0)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5편 §5-107조 Official Comment 2는 *Sound Market Street v. Continental Bank International* 사건을 인용하여 "사건의 합의가 없는 한 신용장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은행에게는 적시에 또는 특정의 시기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41) 平野英則, 전계 주 1, 전계논문, p.57.

4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 개설은행이 2000. 11. 28. 통지은행으로부터 Test Key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전문을 받고서도 2000. 12. 7.까지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0. 12. 11 통지은행으로부터 다시 Test Key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전문을 받고서도 2001. 1. 2.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개설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인 개설의뢰인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18959 판결).

## (2)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 ① 수익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수익자가 신용장의 통지지연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통지은행이 아니라 개설의뢰인이다. 왜냐하면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와의 원인(매매)계약에 따라 적시에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한 적시에 신용장의 통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매매계약에 기초하는 선적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4)</sup>

## ② 개설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통지은행의 歸責事由에 기초하는 통지의 지연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이 배상에 응한 개설의뢰인은 누구에 대하여 최종적인 손해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 개설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우선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의 귀책사유에 기초하는 통지의 지연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개설은행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UCP 600 제37조 a항은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 하에 하는 것이다."고 한 뒤, 동조 b항에서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판단 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시대로 사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은행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면책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의 선정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3) 平野英則, 전계 주 1, 전계논문, pp.57~58.

44) 平野英則, 전계 주 1, 전계논문, p.58.

b. 통지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하는 신용장의 통지 지연에 의한 손해에 관해서는 통지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수입지의 개설의뢰인은 수출지의 통지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막대한 비용, 시간 및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sup>45)</sup>

## 2. 위조 신용장의 통지에 따른 통지은행의 책임

(1) 신용장의 위조 목적

신용장의 위조란 신용장의 개설권한이 없는 자(위조자)가 개설은행(피위조자)의 이름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즉 무권한자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은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은행인 경우도 있다. 신용장의 위조는 위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수출 환어음 매입대금의 사취(수출자에 의한 위조)

이 경우는 수출자가 신용장을 위조하고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 환어음의 매입을 받고, 그 대금을 사취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경우이다. 수출자는 화물을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위조신용장에 기초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한 수출서류의 매입을 의뢰한다. 매입은행이 위조신용장인 것을 모르고 매입을 하면 수출자는 매입대금을 입수하여 행방을 감춘다. 이 경우 매입은행에게 제출되는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거나 또는 실제로 선적이 행해지고 있더라도 화물은 상품가치가 없는 경우 중 하나이다. 이 경우의 희생자는 수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매입은행이다.

또한 수출자에게 그다지 신용도가 없으며 거래은행에게 수출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이 높은 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고 수입자가 그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위임장부 매입)이 이용되고 있다. 이 위임장부 매

---

45) 平野英則, 전계 주 1, 전계논문, p.58.

입에 의하여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수령한 후 상환을 면하기 위하여 행방을 감춘다. 이 경우에 희생이 되는 것은 제1차적으로는 위임자(수출자)로부터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입자(매입의뢰인)이지만, 제2차적으로는 수입자(매입의뢰인)의 재력 부족 등에 따라 상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매입은행이다.<sup>46)</sup>

### ② 수입화물의 사취(수입자에 의한 위조)

이 경우는 부정직한 수입자가 사기적인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이다.<sup>47)</sup> 즉, 수입자가 신용장을 위조하고 화물을 사취하는 경우이다. 위조신용장에 따라 제시가 요구되는 운송서류가 선하증권인 경우는 원본 3통 중 한 통을 수입자에게 직송시키고, 항공화물운송장인 경우는 수하인을 수입자로 함으로써 수입자는 수입 환어음의 결제를 하지 않고 화물을 사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자는 대부분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통관과 화물인수의 절차방법을 공부하여 사취하는 것 같다. 이 경우에 희생이 되는 것은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사취당하는 수출자이다.

### ③ 중개수수료의 사취(중개인에 의한 위조)

이 경우는 위조자(중개인)가 선의의 수출자에게 호조건의(단 가공의) 수출조건을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사취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위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위조신용장은 수출자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당초는 반신반의하던 수출자도 신용장의 도착에 따라 안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희생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만을 사취당하는 결과가 되는 수출자이다.<sup>48)</sup>

## (2) 통지은행의 책임 여부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한 뒤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며, 또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부기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UCP 600 제9조 b항, f항), 위의 두 가지 의무 중

46) 平野英則, 전계 주 6, 전계논문, pp.59~60.

47) W. Baker & J. F. Dolan, *op. cit.*, p.51.

48) 平野英則, 전계 주 6, 전계논문, p.60.

어느 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조신용장을 통지함으로써 수익자와 매입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된다.<sup>49)</sup>

예를 들면 제2통지은행이 위조신용장을 통지한 경우의 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의 책임분배는 다음과 같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의 확인을 하지 않고 제2통지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로의 통지를 의뢰한 경우, 또는 그 진정성에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제2통지은행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보하지 않고 통지를 의뢰한 경우에(UCP 600 제9조 f항 참조) 제2통지은행이 통지은행의 서명을 대조하는 것에 의하여 통지의 진정성에 만족하고 당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한 때는 제2통지은행은 면책되며, 통지은행이 위조신용장의 통지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반하여 신용장이 통지은행의 통지를 가장하여 제2통지은행에게 송부된 경우에 통지은행의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관하여 제2통지은행이 신용장 송부장 및 cover letter 위에 행해진 서명의 대조에 의하여 확인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진정성에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수익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보하지 않고 통지한 때는 제2통지은행이 위조신용장의 통지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sup>50)</sup>

## V. 결 론

본고는 UCP 600에서의 신용장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통지은행의 의무 및 유의사항, 제2통지은행의 책임 및 제 문제, 통지 지연 및 위조신용장의 통지에 따른 통지은행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본론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통지은행의 의무로는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확인의무와 신용장의 조

49) 平野英則, 전계 주 6, 전계논문, p.62.

50) 平野英則, 전계 주 20, 전계논문, p.65.

건을 정확히 반영시킬 2대 의무가 있다. 또한 기타 의무로는 통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 그 취지를 개설은행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제2통지은행과 관련하여 제2통지은행 규정을 UCP 600에 신설한 것은 기존의 관행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제2통지은행의 책임을 명확화하여 제1통지은행과 동일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향후 제2통지은행의 역할을 맡게 되는 은행으로서는 과거와 달리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지 지연과 관련하여 통지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적시 통지의무는 없지만 개설은행에 대해서는 적시 통지의무를 지고 있다. 통지은행의 귀책사유에 기초하는 통지의 지연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설의뢰인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통지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조 신용장의 통지와 관련해서는 위조 및 변조 신용장은 금액이 US \$1,000만 이상의 거액이며, 무역실무 경험이 일천한 신규업체나 소규모의 개인 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며, 정상적인 SWIFT 메시지타입(MT760)이 아닌 조잡한 우편신용장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국내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거나 또는 저리의 대출금 제공 목적이라는 등 사기성이 다분한 내용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반드시 은행을 통한 SWIFT MT760 등 정상적인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요청하여 취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sup>51)</sup>

---

51)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76.

## 참 고 문 헌

-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김종철, “UCP 600의 주요쟁점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7. 8.
- \_\_\_\_\_,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5.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이대우·양의동, 『신용장론』, 두남, 2007.
- 한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ル 外爲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 高砂謙二, “信用狀統一規則改正とノンコルレス銀行の第二通知銀行問題(上) - 中小金融機關實務對應策お裁判事例から検討 -”, 『國際金融』 第1187號, 2008. 4.
- 平野英則, “信用狀の通知遅延”, 『銀行法務21』, No.713, 2010. 3.
- \_\_\_\_\_, “偽造信用狀の通知”, 『銀行法務21』, No.712, 2010. 2.
- \_\_\_\_\_, “通知銀行の義務(その2)”, 『銀行法務21』, No.706, 2009. 9.
- \_\_\_\_\_, “通知銀行の義務(その1)”, 『銀行法務21』, No.705, 2009. 8.
- 後藤守孝·吉野弘人, 『信用狀統一規則の實務Q&A』, 中央經濟社, 2008.
- Baker, W. & Dolan, J. F.,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 Burjaq, M., “UCP 600 one year on”, *DCInsight*, Vol.15, No.1, 2009. 1/3.
- Ford, M., “Issues and challenges under UCP600”, *DCINSIGHT*, Vol.13, No.4, 2007. 10/12.
-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 \_\_\_\_\_,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511, 1993.

## ABSTRACT

### A Study on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Advising Bank in UCP 600

Park, Suk Jae

This work intends to study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advising bank in UCP 600. An advising bank has two big obligations as follows :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elects not to do so,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redit, amendment or advice has been received. An advising bank has som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delay of advice and the advice of forged letter of credit.

Key Words : UCP 600, Letter of Credit, Advice of L/C, Second Advising Bank
---